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0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안 제15조)	2

I. 제출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안 제15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단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u>10년</u> 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u>5년</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하려는 것임.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시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 이는 최근 우리나라 소유의 위성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성을 포함한 우주자산이 충돌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제품이 보급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태양폭풍이나 우주활동으로 인한 우주방사선이 전자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우주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면서 우주분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우주위험의 종류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임.

□ 이러한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우주항공청도 우주개발 경쟁 심화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위험 확대 및 태양활동에 따른 지자기 교란 등 우주환경 변화가 공공안전과 국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

는 상황에서 우주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우주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